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9월 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삼성KODEX 한국대만IT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8. 4. 10

3. 정정 사유:

- 설정단위 변경(100,000좌 → 10,000좌), 해외주식 정의 정비, 투자한도 및 운용제한 조항 조정, 법 사항 반영
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8조(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)	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.	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· 지정참가회사, 일반사무관리회사,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22조(설정단위)	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,000좌로 한다.	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,000좌로 한다
제34조(투자대상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_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, 신주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국내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발행한 것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_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으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주식"이라 한다)
제35조(투자한도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(신 설)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(추 가)의 규정에 불구하고 __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~4. (생 략)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(추 가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	6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40 이하로 한다.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,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__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~4. (현행과 같음)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,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제36조(운용 제한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____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 6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____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 6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부칙	(추 가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(설정단위 변경(100,000좌 → 10,000좌), 해외주식 정의 정비, 투자한도 및 운용제한 조항 조정, 법 사항 반영)